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7-10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8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8누7337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
원고, 피항소인 A 주식회사

[redacted]

피고, 항소인 [redacted]시장

제 1 심 판 결 [redacted]지방법원 2018. 10. 31. 선고 2018구합65683 판결

변 론 종 결 2019. 4. 12.

판 결 선 고 2019. 5. 17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8. 5. 9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8,193,070원, 지방교육세 3,222,300원,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7-10

농어촌특별세 1,611,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의 "시도하는 등의 진지한 노력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"을 "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점유자들로부터 점유이전의 대가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정상적인 방법의 진지한 노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점"으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 "있다는 사실" 다음에 "과 이 사건 부동산이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수회 유찰되었다는 사실"을 추가한다.

2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7-10

재판장 판사 이재영

판사 이승철

판사 김제욱